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11
----------	-------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이헌승 · 김정재 · 서명옥
서일준 · 백종현 · 윤상현
박성훈 · 안철수 · 박덕흠
김선교 · 이성권 · 김상훈
최형두 · 송석준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신속·공정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포함된 민원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을 권익위원회에 이송한 기관에서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부재함.

이로 인해 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가 불필요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는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시 발생하는 징계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감경 또는 면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제3호, 제43조제6항 신설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충민원의 내용 중 욕설, 협박 등 폭언이나 모욕, 성희롱 등의 표현이 상당한 부분 포함되어 정당한 고충민원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제4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권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이송된 고충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해당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충민원의 이송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기관등의 장이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 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 ----- ----- ----- ----. ----- ----- -----.
3. (생 략) ② · ③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고충민원의 내용 중 욕설,</u> <u>협박 등 폭언이나 모욕, 성희</u> <u>롱 등의 표현이 상당한 부분</u> <u>포함되어 정당한 고충민원이</u> <u>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u>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 ⑤ (생 략) <u><신 설></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권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u> <u>고충민원을 이송한 행정기관등</u> <u>의 장이 이송된 고충민원의 처</u> <u>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u> <u>등을 이유로 해당 고충민원 처</u> <u>리 담당자에게 징계를 하는 경</u>

	<u>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u> <u>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에</u> <u>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u>
--	--